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 2018. 2. 6. [화] 10:00
-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 (본관 419호)

국 회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 공청회 개요	1
1. 목 적	1
2. 일시 및 장소	2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2
4. 진행방법	2
5. 기타사항	3
□ 진술요지	5
○ 김 정 호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7
○ 안 종 철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23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5건)	37

공청회 개요

1. 목 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건)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5건)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674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대표발의/7875)
-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930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997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11362)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2. 6.(화) 10:00
-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실 (본관 419호)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가. 공청회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나. 진술인(2인)

- 김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 안종철(현대사회연구소 소장)

4. 진행방법

가.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회의로 진행
하되, 공개로 함

나. 회의는 진술인의 진술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다. 진술순서, 질의순서 및 질의시간은 간사협의로 정함

5. 기타사항

가. 위원석 배치

- 위원회 회의장의 위원배치에 따름

나. 진술인 좌석배치

- 회의장 전면 오른쪽부터 진술순서에 따라서 배치함

다. 방청인 방청안내

- 정부관계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에 대하여는 방청권을 배부함



진 술 요 지

김 정 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

● 주요학력

- 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200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3기)
- 2017.10.~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
- 2016.3.~현재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
- 2016.9.~현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 2017.12.~현재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 법무법인 이우스 구성원 변호사

5·18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김정호

1. 들어가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더 규명할 진실이 남아 있느냐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명령자를 아직까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술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자 규모와 암매장의 진실 또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조사는 총 3번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가 1988년의 국회청문회이고, 두 번째가 1995년 검찰조사이며, 마지막이 2007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의한 조사입니다. 이 세 차례의 공식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헬기사격과 전투기 광주폭격 대기설, 80위원회 및 511연구위원회의 5·18 군 기록 조작 의혹¹⁾ 등이 진실규명의 새로운 과제들로

1) 전두환 정부는 1985년 5·18대응 및 백서 발간을 목표로 '80위원회'를 비밀리에 구성·운영했다. 전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규명된 진실의 부분적인 내용조차도 의문이 제기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에는 전두환회고록이 발간되어 법원으로부터 출판금지가처분결정²⁾이 되기도 하였

두환 정부와 같은 이유로 노태우 정부도 1988년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비밀리에 대응 조직을 구성·운영했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보한 군 자료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1988년 5월 ‘제13대 국회 광주사태 대비’ 목적으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중요한 사회·정치적 이슈로 등장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문제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대응기구로 출발했다.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대비책으로 “모든 논의를 국회로 수용하여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참고자료의 철저한 검토 및 제출 준비, 능동적인 증언 및 답변 실시를 위한 증언계획 수립, 시위군중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등을 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상황일지, 부대사, 계엄사, 국방부 발표문, 국회답변, 민화위 증언, 군사 재판기록, 합동수사 기록”등 모든 공식문서의 검토를 제안했다. 1988년 구성된 국회대책특별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1차관보, 동원예비국장, 인사국장, 정책기획관, 정훈국장, 법무관리관, 공보관, 정보보좌관, 합참작전(육)차장, 정본2부장, 육군민사처장, KIDA부원장’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회대책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로 ‘**511연구위원회**’를 편성·운영하였다. 실무위원회로 편성 운영된 **511연구위원회**는 국방부 동원예비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합참 작전(육)차장, 보안사 700부대장, 육군 기획민사처장, KIDA담당관 등 5명의 위원과 전담 실무위원 14명으로 구성된 자체 실무위원회로 운영되었다. **511연구위원회**는 조직의 기능으로 ‘대의 창구 역할, 관련부서 의견 검토·조정, 자료 수집·정리·제공, 주요 쟁점 대응책 강구, 기관간 협조’를 주요 기능으로 상정하고 참여 기관별 구체적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였다. 511연구위원회는 주요 업무 처리 사항으로 ‘사태일지(군관련) / 쟁점사항 정리, 국방부 기본 입장 정리 및 문안작성, 소관별 예상질의 답변서 초안 준비, 증언자료 요점 정리, 국정조사 대응책 검토’를 실시했다. 또한 국회대책특별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511연구위원회와 같은 실무위의 편성·운영과는 별개로, 각 기관과 부서별로 자체 실무위원회 편성·운영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침이 하달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군본부는 1988년 2월부터 자체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안사는 자체적으로 ‘511분석반’을 운영했다. 보안사의 511분석반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산하의 기관별·부서별 자체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군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민정당, 안기부 등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 대응 기구를 편성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1988년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노태우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응기구를 구성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을 도모했다. 노태우 정부는 511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대응조직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청문회 당시 국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정했다. 보안사는 아예 511연구단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라는 예상 질문까지 작성하여 답변과 대응 방침을 미리 준비했다.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보안사가 작성한 예상 답변에 따르면 “광주특위 조사활동이 개시됨에 즈음하여 방대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수사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 당시 수사관계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업을 편의상 511작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사의 예상 답변처럼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보안사는 참모장 직속기구로 511분석반을 구성하여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질의에 대하여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보안사령부에서 부대 기능과 편제를 연구하는 팀을 잠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511연구단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 결과적으로 **1988년 광주청문회 과정에서는 511연구위원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2)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계속적인 왜곡과 폄훼 시도는 오히려 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계기라고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상이한 시각들이 3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존하는 것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포된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라는 5·18 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언론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통해 광주의 진실을 신군부가 의도하는 내용대로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의 진실은 은폐되고, 신군부의 폭도담론이 광주전남이외의 지역에서는 마치 사실인양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이 영향은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군부가 만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도담론이 갖는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잔영과 맞물리면서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와 왜곡의 기제로 현재화되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최근 5월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차원이 공인된 보고서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 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발간과 헌법 전문 수록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국가의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5·18담론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 달라는 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왜곡된 5·18민주화운동을 국가 차원에서 올바르게 자리 매김해 달라는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2.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과 판결,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평가

전두환 등 일단의 군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신군부는 소위 ‘12.12. 사태’ 이후 전국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자,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였습니다. 그러자 광주에서는 위와 같은 신군부의 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군부 군인들은 1980. 5. 18.부터 1980. 5. 27.까지 광주시민들을 구타하거나 사살하는 방법으로 위 시위를 무력 진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5.18 민주화운동 이후 진상규명을 거쳐, 1990. 8. 6.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5. 12. 2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002. 1. 26.

『5·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차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위 신군부 세력들의 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로 규정하였고, 이를 내란행위로 보아 신군부 구성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³⁾)

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1) 채무자 전두환 등이 '12. 12. 사태'를 통하여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화,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강압을 가하자 광주에서는 이에 항의하기 위한 시민들의 일련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 전두환 등을 위시한 군부세력은 1980. 5. 18.부터 1980. 5. 27.까지 공수부대를 비롯한 군부대를 광주에 투입함으로써 위 시위들을 난폭하게 진압하였다. 그 후 채무자 전두환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시위진압 등과 관련하여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한편,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채무자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행된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5.21. 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희성이 같은 달 25. 오전에 김재명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군본부 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채무자 전두환, 황영시, 이희성, 주영복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황영시는 같은 달 25. 오후 김재명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소준열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 23. 12:30경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호용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 상황을 알려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소준열이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적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성기독교청년회(YM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이정연 등 18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전제로 '광주재진입작전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위 각 법률 및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지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들 5,700

대한 사격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채무자 전두환 등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다른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을 실시하는 데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였다는 이유로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던 것이다.

(3) 나아가 위 판결은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채무자 전두환 등의 주장에 대하여 ‘채무자 전두환 등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가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 혹은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채무자 전두환 등이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방위의사나 피난의사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여 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1997. 5. 9.부터는 매년 5. 18.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됨으로써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해마다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당시 시민들의 일기, 사진자료,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피해자 보상 및 진상규명 기록 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들이 2011. 5. 25.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정권의 계엄령에 맞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은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거나, 연행되었으며,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는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및 가족들에게 3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이데올로기적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일부 세력들로부터 ‘빨갱이’, ‘간첩’이라는 오명을 쓰며, 오랜 시간동안 인격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3. 국민통합의 필요성, 국가(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 보고서 필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과 폄훼를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을 위해서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것이 왜곡과 폄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상규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대표적인 왜곡이‘폭도’,‘빨갱이’,‘거짓말쟁이’,‘북한군개입’,‘시민들이 먼저 무장’등입니다.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서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해자로서는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용서할 대상조차 모른 상황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채로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현재까지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나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의 논란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필요합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진상보고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면 그 보고서의 권위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왜곡과 폄훼도 계속될 것이며, 상처와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4.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 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학살자나 가담자 등 책임자처벌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특별법의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발포명령, 지휘권이원화, 헬기사격, 암매장 등 5.18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한 공수부대와 조종사들의 삶과 가족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소환하여 그들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헬기사격여부를 규명할 핵심적인 참고인들인 헬기 조종사나 군 관련자들이 검찰의 소환요구에도 응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진상규명과제 앞에 가로놓인 엄연한 현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범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최경환의원의 법안입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최경환의원의 위 법안은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시키자는 정도의 수준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극적인 내용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자에게 소극적인 형사책임 경감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일정한 내용의 인센티브(포상금 지급, 가산점 부여 등)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내용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거나 중요 제보자들을 배려하거나 유인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정부시절 실종자가 많은 남미에서도 직접 암매장에 참여하였거나 목격자의 제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진상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사례가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를 정리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법은 학살자나 가담자 등 책임자처벌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진상규명에 특별법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조사권한의 실질적 강화방안

5·18진상규명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문사위와 진실화해위의 세월호 조사위 활동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조사권한에 있어서 물적 증거의 확보와 인적증거인 증인의 출석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단지 물적 증거인 자료 제출과 인적 증거인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도덕적 강제력에 머물렀고, 실제 이를 실효성 있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의 내용이고,

이러한 고민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가. 동행명령제도(인적증거 출석확보방안)

5·18진상규명법안에 따른 동행명령제도는 국회에서 행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제도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태료 처분 이상의 형사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사제재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명령제도는 국회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회의장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서 유래한 것인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과태료가 아닌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는 규정이 그것입니다. 동행명령제도가 생긴 1988년 이래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법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어서 생긴 문제이므로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을 상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물적 증거 확보방안

수사·기소권 부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최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확보되지는 못하더라도 기타 다른 방식으로라도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력하게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권한의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고발 및 수사요청 조항조차도 없다면 그로 인한 무기력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다. 청문회

5·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자칫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될 경우 진실규명과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로부터 37년 전인 1980년 5월 당시의 사건의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얼마만큼 정확성과 신빙성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전제에서, 5·18진상 규명법안에 청문회 관련 규정을 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의 출석을 강제하고 신뢰성 있는 증언 및 진술성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관련규정을 두어야만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관련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철저한 진실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 진행의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6. 보론-5.18 왜곡행위(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

5·18민주화운동 부인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5·18유공자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벌칙을 신설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나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문명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고, 우리사회의 품격과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법제도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남북문제가 우리민족, 우리나라 최대의 아킬레스
건이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인데, 거기에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다면 우
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안 종 철

-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

● 주요학력

- 서울대학교 정치학 석사
- 전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 주요경력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기획조정관(고위공무원)
- 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 단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필요성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안 종 철

1. 머리말

1980년에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의 평범한 광주시민들이 군부의 정치개입, 군사반란과 내란, 국가의 불의한 폭력에 항거하면서 목숨을 던지며 대항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사건이었다. 1980년 광주시민들이 보여줬던 5월의 희생정신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 온 힘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가치는 쉽게 밝혀지지 않았고 인정되지 않았다.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은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왜곡하였고 진실을 밝히려는 국민들을 탄압하였다. 진실을 향한 국민들의 용기와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은 지금처럼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고 남아있다. 518민주화운동의 해결원칙이라고 제시했던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배상,기념사업의 5대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진상규명 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간인 사망자 165명, 군인사망자 23명, 경찰공무원 사망자 4명 등 사망자만 192명이었고 그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이 200여명, 행방불명자 70여명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도 발포명령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암매장지를 찾는 작업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38년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 38년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인정받았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되었지만, 몇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 과거의 진상규명 사례

가. 1980년대 초기 민간차원의 진상규명 요구

1980년 5월 27일 광주에서의 항쟁이 계엄군에 의해 진압된 이후 전두환과 신군부 정권은 동 사건을 “소요, (데모, 소요) 사태, 광주사태, 폭동” 등이라고 명명하였다. 당시 정권은 지역민의 저항을 북한의 고정 간첩과 김대중을 추종 하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이라고 폄하했던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고, 진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설명하려는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다. 또한 광주항쟁의 원인을 ‘지역감정’으로 규정하여 1980년 5월의 저항을 ‘지역’의 문제로 축소·유폐시키고, 집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에 한국사회가 공포와 침묵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을 때 5·18 유가족 및 관련자 그리고 지역민들은 사건 직후부터 5·18의 진상을 알리고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1년 항쟁 1주년 즈음하여 이들은 계엄군의 잔인한 진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5·18이 가지는 순수성을 강조하였다.

유가족 및 관련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진상규명은 1983년 말 학원자율화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시민사회로 확산되었다. 종교계, 학계, 사회계 등 각종 관련단체들이 조직되면서 5·18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5·18은 ‘광주의거’,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5·18민중봉기’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활성화될수록 ‘민중’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민중항쟁”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기도 하였다.

나. 1987년 6월 항쟁과 진상규명 요구

1987년 ‘6월항쟁’은 5·18에 대한 전 시민적 관심과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 국가는 5·18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7년 7월 2일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광주사태 치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5·18에 대해 공식적인 재평가를 선언했다. 이에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 31개 단체는 “80년 이후 현 정권의 전제와 폭압은 광주항쟁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미봉책으로도 호도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였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 ‘광주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기서 5·18의 직접적인 원인을 “계엄군의 과잉진압이 발단”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사건이 8년이나 경과하였기 때문에 ‘진실발견의 어려움과 조사의 지연에 따른 피해자 보상의 지체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해 버렸다.

민화위는 5·18을 ‘민주화투쟁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면서 ‘과잉진압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광주사태 치유방안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1988년 4월 1일 노태우 정부는 ‘광주사태 치유대책’을 발표하면서 5·18 문제를 위한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당시 정부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성의 있는 지원, 망월동묘지의 공원화와 위령탑 등이 건립될 경우 정부 지원, 부상자의 치유와 유가족 지원 및 유가족

자녀에 대한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기타 보상 사업 등을 “치유대책”에 포함시켰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수용되지 않았다.

요컨대 노태우 집권기 정부는 국가의 과잉진압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불법 행위와 과격 행위도 사건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관점 또한 고수하였다. 결국 1980년 5·18이라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여 어떻게 전개되었고, 실제 내용이 무엇이며, 누가 사건의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전략적 선전에 불과하였다.

라. 1989년 국회 광주청문회의 진상규명

이에 대하여 5·18 관련자들과 관련단체 및 시민사회 진영은 노태우 정부의 노선을 거부하고, ‘진상규명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그러다 제13대 총선결과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을 이용하여 1988년 7월 국회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5·18 진상규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8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 총 32회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5·18에 관한 사건들을 조사하였다. 결국 ‘광주청문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사건의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해야만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주요 관련자들은 진술을 거부하였고,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데 현실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의 진상들이 밝혀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광주청문회는 5·18의 주요 쟁점들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발표명령계통과 지휘체계의 이원화 배경, 민간인 사망자의 규모, 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문제 등 다수의 사안들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국회청문회 이후, 5·18관련자 및 정치인, 재야 세력들은 5·18과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려 했으나, 전두환의 청문회 참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김영삼은 집권한 첫 해 1993년 5월 13일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며 현 정부는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로서 그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높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는 공식적으로 5·18을 민주정부의 성립의 한 계기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김영삼의 집권 과정에서 배태되었던 정치적 성격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또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과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이 ‘결코 암울했던 시절의 치욕을 다시 들추어내어 갈등을 재연하거나 누구를 처벌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만 하였다. 책임자 처벌은 ‘오늘에 다시 보복적인 한풀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함으로써 새롭게 화해하자’고 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이 ‘앞으로 대안’을 실행해 나가자는 억측에 다름 아니었다.

이 담화에 대해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선 진상규명, 후 명예회복을 요구하면서 전국의

각계 각층으로 반발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2·12, 5·18 고소고발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는 5·6공화국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 사이에 피고소·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여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장윤석 부장검사)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국가기관에 의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졌다고 하며, 1995년 7월 18일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이에 검찰의 5·18불기소 결정에 항의하여 기소 촉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 서명 운동 등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마. 1995년 5·18특별법과 진상규명

그런데 이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내용이 국회에서 폭로되면서 대선자금 문제로 정국의 흐름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김영삼은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내렸고, 이에 의거하여 ‘12·12 및 5·18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로부터 이들 만에 두 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었고, 이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위한 조사와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검찰 수사(김상희 부장검사)에 의해서 5·18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대의 이동과 작전일지 및 진압에 참여 혹은 동원된 계엄군에 관한 자료, 당시 정부와 보안부대 등의 자료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5·18특별법을 적용하면서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

록은 30만 쪽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5·18기념재단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된 수사 기록은 5만여 쪽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5·18특별법에 의거한 조사 결과, 재판 도중 사망자를 제외한 15명에 대한 처벌이 1997년 4월 18일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하게 적용된 죄목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좌익 선동자에 의해 폭동’이라 규정했던 정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부정되어야 했고, 이와 관련하여 후속작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5·18과 관련하여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은 묻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은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을 제의하였고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다른 관련자들은 특별 사면되었다.

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반란 및 내란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았지만 5·18과 관련하여 5월 21일 전남도청 앞 발포 명령, 지휘권 이원화, 외곽봉쇄 과정에서 의 민간인 살상, 실종자 등의 문제 등이 미해결로 남았다. 국가의 의한 진상규명 작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국방부 내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재조사 하도록 했다. 이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회청문회,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 등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국방부 내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관련된 장병들

과의 면담을 통해 ‘5·18진상규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복 자료를 제외한 4만 8천여쪽의 자료를 수집, 시위 진압에 참가했던 공수부대원 71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진상에 접근하는데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큰 성과는 그 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군관련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엄사와 육군본부의 「작전상황일지」, 보안사의 여러 종류의 「일일보고」, 전교사·31사·11공수여단 등 작전부대의 「작전상황일지」, 전교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등의 평가분석 자료와 계엄사 「계엄위원회 회의록」, 5월 17일에 열렸던 「전국주요지휘관회의록」(필사본) 등 총 57권의 자료를 기무사령부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무사 자료 중에는 합동수사본부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8’을 연계시키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을 불순분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자료도 있었다.

또한 1988~89년 작성된 ‘국회 광주 청문회 대비 자료’는 군부가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었다. 이들 자료의 작성자는 국방부 511위원회와 보안사의 511분석반으로 구분된다. 국방부 511위원회는 당시 국방부에서 발굴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사태」라는 책자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각 시간대별로 부대(대대 또는 지역대 단위) 배치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진상규명의 필요성

국가의 의한 진상규명 작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발포명령자 확인, 지휘권 이원화, 실종자 확인 및 암매장지 발굴, 헬기사격, 전투기 폭격대기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책임있게 편찬한 국가보고서가 없음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세력들에 의해 북한군 침입설 등의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독립적인 특별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월 21일의 도청 앞 집단발포, 5월 27일의 계엄군의 무력진압, 5·18 기간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 암매장된 시신 발굴 등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세월이 흐를수록 관련자들이 사망하거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행방을 찾기가 어려워지며 관련 자료들 역시 훼손되거나 찾아내기 어려워진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의혹들이 규명되어야 한다.
- 그동안 있었던 몇 차례의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의혹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협조가 필요한 정부기관이 자료를 비공개하거나 협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한계에 봉착하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원천적으로 곤란하게 된다. 또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활동에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의적인 조사방법 만으로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집단적·조직적인 인권침해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강제조사권이 부여되고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 아직까지도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한 당시의 군인들이 침묵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용기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 하루빨리 군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당시 광주에서 진압작전을 펼쳤던 헬기조종사들과 공수부대원들의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거주지 확인을 하지 못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고 또 면담을 거부할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조사활동에 임하는 조사요원으로 특별기구의 조사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해당 사안에 직접·간접적 이해관계 있는 국가기관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위원과 조사요원에서 배제되어 공정한 조사와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던 국방부와 산하 육해공군 및 각 부대들이 기록한 많은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그동안 군사정권하에서 진실을 감추기 위해 변조되고 왜곡되어 보존되었다. 1985년과(안전기획부 80위원회) 1988년(국방부 511 대책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 광주민주화운동 자료가 조작·변조되어 역사왜곡 되었다. 80위원회는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정치구도에 변혁이 일어나자 이에 대비하고 정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군사자료를 조작할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군·경찰·행정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80위원회의 구체적인 자료가 부분적으로만 발견되고, 백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상 나타나고 있다. 511 대책위원회는 88년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국방부에서 대책반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는데 여기서 전반적인 자료 왜곡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39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의원 대표발의] 71
-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99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 125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 16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47
----------	------

발의연월일 : 2017. 4. 13.

발 의 자 : 김동철 · 박준영 · 정인화
 윤영일 · 최운열 · 김관영
 천정배 · 최도자 · 이동섭
 김광수 · 이용주 · 송기석
 박선숙 · 오제세 · 박지원
 조배숙 · 김한정 · 채이배
 김경진 · 이태규 · 박영선
 이찬열 · 김삼화 · 오세정
 김종희 · 김수민 · 최경환(국)
 최명길 · 김성식 · 신용현
 강창일 · 김상희 · 노웅래
 장정숙 · 권은희 · 손금주
 정동영 · 이상돈 · 황주홍
 김중로 · 추혜선 · 김종민
 심재권 · 유성엽 · 장병완
 박주선 의원(46인)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
 ·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주요내용

-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및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나.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 라.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마.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사.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함(안 제33조).
- 아.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압수·수색, 검

- 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 자. 위원회는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
- 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 카. 정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행방불명자 및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 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1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및 행방불명자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방불명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2. “5·18민주화운동 단체”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말한다.
3. “정밀조사”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주 동구 금남로 245 소재 전일빌딩 등 계엄군의 헬기사격으로 인한 피격이 의심되는 장소(이하 “피격장소”라 한다) 등에 대한 각종조사와 이와 관련한 과학적 추론을 말한다.

제3조(진상규명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있었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1.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2.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3.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4.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7조의 결정을 내린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 진상규명 결정 및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4.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상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회가 선출하는 5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5·18민주화운동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하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권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1년간 진상 규명활동을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조사기간을 만료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회가 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

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파견요청 등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 수행 중 명백하고 현저한 공적을 이룬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결정을 거쳐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 승진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진상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면 대상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1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2조(피격장소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피격장소에 남아있는 탄흔 및 탄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위원회 활동종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한다.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격장소 내·외부의 탄흔, 탄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증거물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제200조 및 제24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현지 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5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 등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위원회로부터 현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이 법 외에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다른 법령의 근거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되며, 자료 및 물건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자료 및 물건의 폐기·이관·이첩 등 부존재 사유를 위원회에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 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실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구체적인 소명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8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동행명령 등) ①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상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청문회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관계 기관, 시설, 단체,

개인 등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2조(고발 및 수사의뢰)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결과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 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조치가 위원회 활동 종료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된 진상규명 사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진상 규명 신청인 및 조사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 전이라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5조(공소시효 정지) 위원회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상규명사건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까지 그 진상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제36조(준용규정)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37조(진상규명 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조사 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8조(진상규명 미해결 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

하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미해결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각하 결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결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결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미해결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상규명 신청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는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국가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해 결정내용을 비공개 할 수 있다.

제40조(종합보고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조사가 종료된 진상규명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연례적으로 조사 종료 또는 진행 중인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사건 희생자,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취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 기관은 당해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 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절 청문회

제41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

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장 피해회복 등을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46조(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① 정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희생자, 행방불명자 및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는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다. 다만 배상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4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5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①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7조에서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각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제56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원장이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
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
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최경환(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75
----------	------

발의연월일 : 2017. 7. 10.

발 의 자 : 최경환(국)·강훈식·권미혁
 권은희·기동민·김경수
 김경진·김경협·김관영
 김광수·김동철·김병욱
 김삼화·김성식·김수민
 김종대·김종회·김중로
 김한정·김해영·김현권
 남인순·노응래·노회찬
 민병두·민홍철·박광온
 박선숙·박영선·박용진
 박주민·박주선·박주현
 박준영·박지원·박홍근
 서영교·설 훈·소병훈
 손금주·송기석·송옥주
 신경민·신용현·안민석
 오세정·오영훈·오제세
 원혜영·위성곤·유성엽
 유은혜·윤관석·윤소하
 윤영일·윤후덕·이 훈
 이동섭·이상돈·이언주
 이용득·이용주·이용호
 이원욱·이인영·이찬열

이태규 · 이해찬 · 인재근
장병완 · 장정숙 · 정동영
정성호 · 정양석 · 정인화
정춘숙 · 조배숙 · 조승래
주승용 · 채이배 · 천정배
최도자 · 최명길 · 최인호
추혜선 · 하태경 · 황 희
황주홍 의원(88인)

제안이유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1988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5·11연구위원회(5·11 분석반)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음.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가기 위해 광주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고 공수부대는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쏘았다고 왜곡했고 공수부대의 총검진압 내용을 삭제했으며 화염방사기 사용기록을 가스탄으로 바꾸는 등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음.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5. 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암매장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를 규명하고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진실왜곡·조

작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조사

5.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조사

6.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8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5·18관련 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23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청의 방식) ① 제24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

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 「형사소송

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개인, 기관등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3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8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진상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38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

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

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5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9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

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301
----------	------

발의연월일 : 2017. 9. 12.

발 의 자 : 이개호 · 강병원 · 강창일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권칠승 · 금태섭 · 기동민
김경수 · 김경협 · 김두관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김성수 · 김영주 · 김영진
김영춘 · 김영호 · 김정우
김종민 · 김진표 · 김철민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노웅래 · 도종환 · 문희상
민병두 · 민홍철 · 박경미
박광온 · 박남춘 · 박범계
박병석 · 박영선 · 박완주
박용진 · 박재호 · 박 정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백재현 · 백혜련 · 변재일
서형수 · 설 훈 · 소병훈
손혜원 · 송기헌 · 송영길
송옥주 · 신경민 · 신동근
신창현 · 심기준 · 심재권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양승조 · 어기구 · 오영훈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윤호중 · 윤후덕 · 이상민
이석현 · 이수혁 · 이용득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이학영 · 이해찬 · 이 훈
인재근 · 임종성 · 전재수
전해철 · 전현희 · 전해숙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제윤경 · 조승래 · 조용천
조정식 · 진선미 · 진 영
최운열 · 최인호 · 추미애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홍의락 · 홍익표 · 황 희
의원(120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제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5·18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 중이었다는 증언과 함께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과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하며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5조).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규명,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희생자 외의 사람
 -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5·18 민주화운동 기관·단체”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각종 의혹사건”이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군 심리전 요원의 잠입활동, 간첩 조작사건, 5·18 기획설,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와 헬기 사격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등을 말한다.
6. “진상 왜곡”이란 5·18민주화운동 이후 정부가 자행한 관련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행위를 말한다.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규명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2. 행방불명자 신고 및 규모 조사·경위 추적
3. 집단 학살·암매장지 조사
4.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5.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6. 중요 가담자 간첩조작사건
7. 교도소 습격사건, 무기 탈취 등 신군부의 왜곡에 관한 사항
8. 대검·화염방사기 사용 여부
9.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봉기 기획 의혹
10. 5월 27일 새벽 상무충정 작전
11. 헬기 기총소사 의혹
12.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13. 진상 왜곡을 위한 5·11 연구위원회의 활동
1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5·18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는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0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현장 검증 및 조사 소위원회
2. 문서 검증 및 조사 소위원회
3. 진술 청취 및 조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문서 및 현장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

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군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능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사관) ①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제5조에 규정된 조사업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2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및 현장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및 현장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제4장 보칙

제35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정부는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36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및 피해자의 희생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5·18민주화운동 원인 제공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5·18민주화운동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5.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대통령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71
----------	------

발의연월일 : 2017. 11. 1.

발 의 자 : 김동철 · 천정배 · 이동섭
박 정 · 박준영 · 윤영일
송기석 · 윤소하 · 위성곤
최경환 · 주승용 · 원혜영
이원욱 · 박홍근 · 김경진
김중로 · 박주선 · 장병완
이용주 · 정인화 · 유성엽
의원(21인)

제안이유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 등을 통한 진상규명 관련 진술 확보를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1988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 관계기관들은 5·18 진상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으로 군 관련 기록을 왜곡·조작했다는 증거도 드러나고 있

는 실정임. 이러한 왜곡된 내용들은 5·18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근거가 되어 국민 분열을 조장해 왔음.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함. 나아가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필요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요청케 하는 등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또한,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신원 보호장치를 강화하며, 제보자의 진상규명 증언 등으로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

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

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차.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카.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

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타. 신청자등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

파.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암매장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를 규명하고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진실왜곡·조

작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4.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조사
 5.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조사
 6.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8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5·18관련 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

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3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청의 방식) ① 제24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회) ① 위원회는 개인, 기관등이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회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3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8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진상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청문회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

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1절 고발 등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46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47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9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포상 등

제50조(포상금)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51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신청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

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

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들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들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들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들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들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

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①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60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55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

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2
----------	-------

발의연월일 : 2018. 1. 15.

발 의 자 : 하태경 · 권은희 · 김관영
손금주 · 오신환 · 이연주
이찬열 · 이혜훈 · 정병국
정운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 국회에 제출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된 법안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계엄군의 헬기사격 명령자 및 시민 피해 현황,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동 법안들은 1988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또는 조작한 의혹사건도 진상규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제창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 김씨 일가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 등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그 정신을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이에 진상규명의 범위에 1988년 국회 청문회 이후에도 국가기관에 의해서 5·18민주화운동이 부정되거나 왜곡 또는 날조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세력들의 준거를 방지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한 행위에 국가기관의 개입여부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함(안 제2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8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6조).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하되, 동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

바.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 중 반민주적·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자.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차.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카.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타. 신청자등의 동의 없이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 52조).

과.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및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의혹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다.

1. 19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암매장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2.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시민들에 대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를 규명하고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자 현황
3. 1988년 국회 청문회를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

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조직 경위와 활동사항,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4.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5.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해당 운동을 비방·왜곡하기 위해 북한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

6.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조사

7. 행방불명자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조사

8.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제3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8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8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상규명사건

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 소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5·18관련 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

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3조(진상규명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24조(진상규명 신청) ①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청의 방식) ① 제24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진상규명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27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8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해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

다.

-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시설·단체 등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개인, 기관등이 진상규

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및 물건을 갖고 있고 그 자료 및 물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유골 감정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소명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

④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진상규명사건명, 압수할 자료 및 물건, 수색할 장소와 물건, 감정할 유골,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위원회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압수·수색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⑦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33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34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28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의무)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진상규명범위 대상기간 중 행정기관·군대·사법부·조직·단체 등의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전에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청문회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0조(증인 출석 등의 의무) ①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증인 등의 보호) ① 증인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참고인이 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를 들어 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녹음·녹화 또는 방송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감정인·참고인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1절 고발 등

- 제44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5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46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47조(피해 및 명예회복)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복권의 건의)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9조(완전한 진실을 고백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①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관계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결정 및 건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절 포상 등

제50조(포상금)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진상규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51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

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신청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들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보호조치 신청) ① 신청자들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들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들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5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

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6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6조(벌칙) ①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4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60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
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
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
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
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
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 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
나 방해한 사람

3. 제55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